

홍성군평생학습관 시설 대관 지침

◆ 홍성군평생학습관 및 홍성군신도시평생학습관 시설 대관과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

I 개 요

- 제정목적 : 평생학습관 시설 대관 운영원칙 확보
- 제정내용 : 이용자격, 대관 범위, 이용신청, 사용허가 등
- 적용범위 : 홍성군평생학습관 및 홍성군신도시평생학습관
- 용어정의
 - “학습관”이란 홍성군평생학습관 및 홍성군신도시평생학습관을 말한다.
 - “기자재”란 학습관이 소유하고 설치 및 비치 되어 있는 각종 장비 및 학습 기자재를 말한다.
 - “담당자”란 학습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직원을 말한다.
 - “신청자”란 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대관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주요내용

1. 이용자격	: 적용, 이용자 요건
2. 대관범위	: 대관 가능 시설 범위
3. 이용시간	: 이용 가능 요일 및 시간, 대관 제한일
4. 이용신청	: 신청방법, 신청 시 필요사항, 신청 취소 등
5. 사용허가	: 사용허가 절차 및 방법
6. 이용제한	: 사용승인 불허 사유, 이용신청 제한 등
7.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	: 운영지침 준수 등 이용자 책임과 의무사항
8. 기자재 사용	: 기자재 현황, 사용 제한, 이상 시 대처 등

1. 이용자격

- 1) 학습관의 모든 시설은 학습관 프로그램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며, 시설의 대관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평생학습기관, 학습동아리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.
- 2) 시설 대관을 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.
 - ① 군청 및 평생학습 유관기관
 - ② 홍성군 학습동아리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

2. 대관범위

- 1) 학습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을 다음과 같다.
 - ① 홍성군평생학습관 : 전시(로비), 1~4강의실, 다목적 강당, 동아리실
 - ② 신도시평생학습관 : 전시(로비), 2~6강의실, 동아리실1~2

3. 이용시간

- 1) 이용시간은 평일(월~금), 9:00~17:00이며, 야간이용은 19:00부터 21:00까지로 한다.(단, 야간이용은 학습관 야간 프로그램 운영일에만 가능하다.)
- 2) 이용시간은 1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, 일자별로 선착순 마감한다.
- 3) 국경일 및 임시 공휴일과 학습관 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날은 대관이 제한된다.

4. 이용신청

- 1) 신청자는 대관 희망일 하루 전까지 흥성군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2) 이용신청 시에는 단체명, 이용목적, 신청자 연락처, 참석인원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. 신청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이 제한될 수 있다.
- 3) 이용신청은 기관·단체당(행사당) 1일 1회 신청 가능하다.
- 4) 예약취소 및 변경은 승인 대기상태일때만 가능하며,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학습관으로 전화하여 취소·변경 할 수 있다.

5. 사용허가

- 1) 학습관별 담당자는 신청서에 따른 일정 및 이용목적 등을 확인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.
- 2) 시설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사유와 함께 통지한다.

6. 이용제한

- 1) 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,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① 정치, 종교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
 - ② 학습관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③ 장비 또는 학습 기자재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④ 관리 유지 및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⑤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습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 - ⑥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(신청서 허위 작성 등)
 - ⑦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
 - ⑧ 신청한 이용시간이 초과하였을 경우
 - ⑨ 신청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관을 양도하거나 재대여를 한 경우
 - ⑩ 이용신청 승인 완료 후 별도의 취소 없이 미이행한 경우
 - ⑪ 기타 학습관 시설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
- 2) 위 사항에 따라 2회 이상 이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7.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

- 1) 이용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고,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파손, 손실, 분실을 하였을 경우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3) 이용자가 반입 기기나 시설, 외부조명 등을 이용할 시 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회 하에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.
- 4) 이용자는 학습관의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8. 기자재 사용

- 1) 시설별 보유 기자재는 흥성군평생학습관 홈페이지 ‘공간예약-예약신청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용신청 시 사용할 기자재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2) 장비 점검,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학습관 내 기자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- 3) 모든 기자재는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.
- 4) 기자재 이용 시 이상이 있을 때 이용자는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.